

서울시보

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seoul.go.kr

제3611호

2020.9.28.(월)



목 차

◆ 고 시

제2020-408호	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무도장 집합금지명령	2
제2020-409호	추석 특별방역기간에 따른 유흥시설·음식점 등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조치 고시	3

◆ 공 고

제2020-2807호	[] 통행의 금지·제한 / [○] 차량의 운행 제한 공고	6
-------------	--	---

고 시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408호

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무도장 집합금지명령

서울시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지역사회로의 추가 확산 차단 및 예방을 위해 무도장에 대한 집합을 금지하였음을 고시합니다.

2020년 9월 28일
서울특별시장

1. 집합금지명령 개요

- 대 상 : 무도장
 - ※ 체육시설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의한 시설
- 기 간 : '20.9.28(월).0시 ~ 10.11(일).24시
- 내 용 : 무도장에 대한 집합행위금지
 - 무도장내에 2인 이상이 모여 스포츠댄스 등 모든 집합행위 금지
- 근 거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호
- 사 유 : 무도장은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콜라텍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체육시설로 주 이용자가 50세 이상의 고령층이며, 밀접접촉과 군집인원이 많은 장소로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에 취약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 조치가 필요함
- 효력발생일 : 2020년 9월 28일

2. 위반 시 조치사항

- 위반한 사업자 및 참여자 고발, 코로나19 감염자 발생 시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
 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 (300만원 이하의 벌금)
 - 집합금지명령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및 방역비용 구상 청구

◆ **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409호**

**추석 특별방역기간에 따른
유흥시설·음식점 등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조치 고시**

추석 특별방역기간 거리두기 강화(2020. 9. 28.)와 관련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유흥시설(유흥주점, 감성주점, 콜라텍, 단란주점, 헌팅포차, 뷔페)과 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제과점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9월 28일
서울특별시장

1. 집합금지조치 연장

- 기 간 : 2020년 9월 28일 00시부터 10월 11일 24시까지
- 대 상 : 유흥주점, 감성주점, 콜라텍, 단란주점, 헌팅포차, 뷔페
- 내 용 :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 금지
- 위반 시 조치사항
 -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(벌금 300만원 이하)
 - 확진자 발생 시 관리 부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(구상권) 청구

2. 집합제한조치 개요

- 기 간 : 2020년 9월 28일 00시부터 10월 11일 24시까지
- 대 상 : 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제과점
- 내 용 :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아래 표에 적시된

핵심 방역수칙 준수

- 위반 시 조치사항
 -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(기본 2주)
 - 위반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고발 조치(벌금 300만원 이하)
 - 확진자 발생 시 관리 부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(구상권) 청구
 - 단, 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 의무화 시설이 전자출입명부 미설치 시 1차 시정명령 및 경고 후 집합금지 조치

< 일반음식점 · 휴게음식점 · 제과점 핵심 방역수칙 >

- * 매장(실내 · 외) 좌석 20석 초과 의무화, 20석 이하의 업소는 권고
- * 150㎡ 이상 음식점(일반 · 휴게) 및 제과점 전자출입명부 설치 · 이용 의무화

사업주 · 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▶ 매장 내 테이블 간 최소 1m 간격 유지 -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,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, ③ 테이블 간 칸막이 · 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 ▶ 출입자 명부 관리 - 전자출입명부 설치 · 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, 4주 보관 후 폐기) *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 · 이용(권고) - 실내 · 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 (포장 · 배달 등)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▶ 사업주 · 종사자 마스크 착용 *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▶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 · 손잡이 등 표 면 소독(일 2회 이상) ▶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	▶ 매장 내 테이블 간 최소 1m 간격 유지 -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,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, ③ 테이블 간 칸막이 · 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 ▶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- 실내 · 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(포장 · 배달 등)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▶ 마스크 착용 *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

< 좌석 도식도(예) >

테이블 간 최소 1m 거리두기	
좌석 한 칸 띄워앉기	
테이블 간 띄워 앉기	
테이블 간 가림막 설치 (빨간색 실선 - 가림막)	

※ 테이블은 몇인용인지, 모양이 어떤지와 관계없이 분리하여 이동 가능한 테이블을 의미하며, 가림막은 높이 70cm 이상, 길이는 테이블의 길이와 동일한 것 사용 권장

3. 법적근거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 제1항 각 호
 - － (제1항)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 - － (제1항 제2호) 흥행, 집회,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0조제7호
 - －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 위반자는 300만원 이하 벌금

4. 처분의 효력 발생일: 2020년 9월 28일 00시부터

5.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며,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6.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7. 담당부서: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

공 고

◆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-2807호

[] 통행의 금지·제한

[○] 차량의 운행 제한

공고

「도로법」 제76조 제2항, 제77조제1항·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

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

[] 통행의 금지·제한

[○] 차량의 운행 제한

을 공고 합니다.

2020년 9월 28일

서울특별시장

도로의 종류	서울특별시도 (자동차전용도로)	노선명	올림픽대로
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	총중량 10톤 이상 차량	구간	청담1교
기간	2020년 9월 28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		
이유 － 도로시설물 등의 구조 보전 및 차량운행의 위험방지			
그 밖의 사항 － 단, 구급차와 소방차 등 긴급차량은 통행 가능			
첨부서류: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			

210mm×297mm(백상지 80g/㎡ 또는 신문용지 54g/㎡)

첨부서류

